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2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동물 선물 외교관행 지양과 선물받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노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9. 4.

다.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선물 외교관행 지양과 선물받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노력

개정안은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나 그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은 현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기록물¹⁾로서 국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음.²⁾

대통령기록물은 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②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③ 대통령선물로 구분되는데, 이중 대통령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의미함.³⁾

대통령선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대통령이 외교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외교선물(Diplomatic Gift)이 존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상 등 주요 외빈에게 자국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데,⁴⁾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외교부, 「재미있는 의전 - VIP를 위한 선물」, 2007

그 목적 중 하나는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하에서는 받는 사람의 심리적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희귀한 물건, 국가의 정수(精髓)를 나타내는 물건 등이 선물로 선정되고 있음.⁵⁾

외교선물로서 동물·식물 등의 생물을 선물로 받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을 선물 받는 경우가 있음.⁶⁾

그런데 일각에서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해당 동물이 적절한 보호·관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 및 복지의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2022년 3월)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인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동물원 등)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⁷⁾

5) Dong No KIM, *The Politics of Gift-Giving and Diplomatic Gifts in Traditional Korea*, "Korea Journal" vol. 64. no. 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pp. 12~13.

6) 국제적으로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판다를 선물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풍산개를 선물받은 사례가 있으며, 최근(2024년 6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을 때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인 알라바이를 선물받은 바 있음.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동물이 동물원에서 사육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일반적인 반려동물처럼 소유자와의 적절한 교감관계를 형성하거나 애정 어린 보호·관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는 경우 국가가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선물로 받은 동물이 적절하게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조문은 동물을 대통령선물로 받는 것 자체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외교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교선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대통령선물로 받은 동물이 적절하게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⁸⁾은 동물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고, 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⁹⁾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수용된다면 해당 동물을 적절한 애정 아래 보호·관리할 수 있는 개인에게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 간 외교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등을 통해 선물로 받은 동물이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

8) 의안번호 2203630, 2024. 9. 4. 발의, 2024. 9. 5. 회부(행정안전위원회)

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안)

안 제7조의2(대통령선물의 관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